

이동통신보안법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13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김장겸 · 강대식 · 김소희
박덕흠 · 추경호 · 김정재
조지연 · 조정훈 · 박준태
이양수 · 신성범 · 김재섭
서천호 · 이인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망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동통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동통신망은 최근 수년간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해킹 · 바이러스 · 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막대한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보안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미

흡하여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이용자의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책임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 검사·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에 관한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며, 국가는 매년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동통신보안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

험식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이동통신사업자는 위험식별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며,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하고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인증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치의 적절성 및 침해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안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이용자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5조).

카.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타. 소비자단체 등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42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9조).

이동통신보안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에 관한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3. “주요이동통신사업자”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란 영세한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이동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 등에 사용되는 통신망을 말한다.

7.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8.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이동통신망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동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방법

9.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태를 말한다.

가. 가입자 개인정보, 통화 목록, 통화 내용 등 정보시스템에 저장

되어있는 정보의 유출

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저해 또는 불능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수준 저해 또는 불능

10. “보안조사”란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비·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 등 이동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이하 “이동통신보안”이라 한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매년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동통신보안 및 침해사고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의무

제1절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제5조(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장비(이하 “주요이동통신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을 위하여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신청 등) ①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주요이동통신장비(이하 “인증장비”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인증장비를 개발·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인증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신청 절차·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강화 의무

제7조(이동통신보안 확보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이동통신보안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이동통신보안지침”이라 한

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이동통신보안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고유식별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기술 적용 및 암호화기준 작성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2. 이용자의 신원 확인 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인증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한 동적 인증 적용 등 기술적 보안조치
3. 이동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4.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생 가능한 침해행위의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보안조치
5.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6.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제8조(위험 식별)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위험식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 등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위험을 분석·평가(이하 “위험식별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침해행위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통신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위험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기준(이하 “위험식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식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식별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험 감소 및 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이에 저장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계획(이하 “이동통신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위험 분석·평가 결과
2. 위험 식별 및 경감 대책
3. 위험 식별 및 경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4. 침해사고 예방 대책
5.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 및 결과 반영 계획
7. 그 밖에 예방, 백업,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적·기술적 대책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보안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 증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와 시스템을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이하 “다층보안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다층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 보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험식별검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⑤ 국가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교육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제13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경제상황의 변화,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동통신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목록을 고시하고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으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목록의 고시 절차, 시기 및 통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확보 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식별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지침(이하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동통신망의 안전성 및 보유 중인 고객정보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예방 등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이동통신 보안책임자(이하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험식별검사의 시행 및 결과 분석
2.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4. 이동통신보안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동통신보안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⑥ 그 밖에 이동통신 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 ①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인증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여부나 사용 중인 인증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위협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및 특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식별 의무) ①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위험, 이동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위험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위험식별검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사 결과 제출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식별 의무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주요이동통신사업자”로 본다.

제17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감소 및 대비 의무) ①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보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할 수 있다.

④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정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수정된 이동통신보안계획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포함한 서면(이하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라 한다)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요이동통신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수정권고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의 결과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자료의 열람으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조치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보안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보호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동통신보안계획 또는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주요이동통신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2. 주요이동통신장비에 관한 사항
3. 이동통신보안지침에 관한 사항
4. 이동통신보안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호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보안 강화에 대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 또는 안정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

제3장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침해사고 통지·신고의무)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 발생을 인지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국가정보원
4. 경찰청
5. 행정안전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경보체계를 이용한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그 즉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인 및 피해 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이하 “침해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분석 및 이동통신보안계획 반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가정보원

3. 경찰청

4.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중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중 일부 구역을 특정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단체 소속 인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 활동 기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침해사고의 정보 제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이동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장비의 보안성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이하 “침해사고 관련 정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이동통신사업자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이동통신망 운영에 관계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피해사실의 통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피해 규모, 내용 및 피해를 입은 이용자(이하 “피해이용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해이용자에게 그 규모와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피해이용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14일마다 그러한 사실을 전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이용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전체 이용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해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의 제공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보고서의 열람으로 제공을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정보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외국의 정보·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절 보안조사 등

제27조(보안조사의 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과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통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나 축소하여 이행하는 등 침해사고 사실의 은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침해사고의 발생 원인, 피해 규모 및 범위, 대책 마련 및 피해이용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발생한 침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견되거나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안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보안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조치 또는 이용자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피해이용자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안조사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 서버 기록 등 관계 자료의 보존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28조에 따른

보안조사단 구성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보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안조사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단장 중 1인은 이동통신보안과 이동통신서비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보안조사단의 인원, 구성, 활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조사 사유의 중대성, 보안조사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보안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안조사단의 활동 기간도 동일한 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단의 구성을 위하여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보안조사의 대상) ① 보안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대상 장비, 조사기간 및 조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요구서등”이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조사요구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사 대상은 조사요구서등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③ 보안조사 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전통지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보안조사기간) ① 보안조사는 조사 대상·사유·범위·난이도·피해정도·통신보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안조사단 활동 기간 내에서 조사단장이 정하되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반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최소 5일의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장비 등의 정밀 검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4.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5. 조사 대상자가 의무 이행 등을 입증 또는 해명하기 위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③ 조사단장은 천재지변, 노동쟁의, 대상자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안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안조사 기간 및 보안조사 연장기간과 보안조사단 활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단장은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중지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안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안조사의 종료) ① 조사단장은 보안조사 기간 중이더라도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보안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출된 장비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종료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할 수 있다.

1. 조사 사유
2. 보안조사단 구성 및 담당 업무
3. 보안조사단이 보전 또는 제출 요청한 자료의 목록 및 실제 보전 또는 제출된 자료의 목록
4. 조사대상 장비 및 인원
5. 조사 방법 등 조사 절차 개요
6. 조사 결과 및 근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2조(보안조사권 남용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① 보안조사를 시행하는 조사단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조사단원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및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조사단원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나 보안조사의 결과 알게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하 “제공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④ 조사단원은 관련 정보의 제공등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단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제33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침해행위나 침해사고 등 이동통신망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2. 이용 중인 이동통신망의 보안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요청할 권리

4. 이용 중인 이동통신망에 발생한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이용 중인 이동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침해사고로 입은 피해의 회복과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34조(이용자 보호의무)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국가의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용자보호와 피해이용자 구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조사 및 관련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피해의 회복과 구제

제3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와 이용자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침해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6조에 따른 보상지침을 준수한 경우 제3항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침해사고 보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보상에 관한 지침(이하 “보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침해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동통신보안지침의 준수에 관한 정보
2.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정보
3. 이동통신보안계획에 관한 정보
4.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보안 의무와 이용자보호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정보

5. 침해사고의 발생원인·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당사자(자연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7조제1항의 정보제공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개 명령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된 사실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통상적인 노력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된 사실
3.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공개되어도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게 된 사실

제4절 분쟁조정위원회

제3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이동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①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5절 단체소송

제42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

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피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이용자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43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거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이용자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이동통신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45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7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단체가 아닌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48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위험식별검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위험식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조사단원
4.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6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사 결과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협식별검사를 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신사업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식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8.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보안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9. 제18조제5항을 위반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10. 제1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11.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식별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보안계획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